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2026. 1. 21.(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윤○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윤○열이 2024. 12.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내란행위)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윤○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23년(일부 무죄 및 이유무죄)을 선고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합1219 판결)

I. 공소사실 요지 및 결론

순번	죄명	구분	요지	결론
1	내란중요 임무종사 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피고인은 윤○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음	유죄
		윤○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령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열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	이유 무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민과 국회 등 주요	유죄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죄명	구분	요지	결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음	이유 무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추○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방○선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었음을 알게 된 후 방○선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켰음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강○구, 김○현, 윤○열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윤○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음	작성 유죄 행사 무죄
3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강○구, 윤○열과 순차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하였음	유죄
4	위증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	유죄

1)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윤○열 등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중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 이에 이 법원은 특별검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II. 쟁점별 판단 근거

순번	쟁점	근거	결론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p>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음(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 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p> <p>그러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병력 등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함</p> <p>윤○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윤○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됨</p> <p>따라서 윤○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됨</p>	인정
2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	<p>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짐.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p>	인정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쟁점	근거	결론
	<p>도록 하였는지</p>	<p>가족부장관은 제외)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7명(= 윤○열, 피고인, 김○현, 이○민, 박○재, 김○호)에 더하여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음</p> <p>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윤○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윤○열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추어 줄 것을 제안하여 윤○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00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목, 송○령, 조○홍, 오○주, 박○우, 안○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음</p> <p>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재, 이○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음. 피고인은 윤○열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한 대로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재차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윤○열을 설득하였음</p> <p>김○현과 이○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음. 피고인은 송○령에게 전화하여 윤○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00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송○령이 그 후에 도착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하였음</p> <p>윤○열은 피고인 등의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00를 넘겨 오○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22:14경 이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p>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쟁점	근거	결론
		<p>정족수가 갖추어진 직후 김○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p> <p>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피고인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p> <p>오히려 피고인은 윤○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데 관여하였고, 윤○열이 그중 한 명인 최○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령에게 전화하였음. 특히 피고인은 송○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송○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송○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윤○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p> <p>피고인과 방○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윤○열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법안 단독 처리 등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공감해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p>	
3	피고인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작위의무 등을 이행하였더라면 윤○열의 비상계엄	인정



순번	쟁점	근거	결론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는지	<p>선포 등 내란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됨</p> <p>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p>	
4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하였는지	<p>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음</p> <p>피고인은 박○재와 이○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강○구가 대접견실을 나가려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켜보았음. 피고인은 최○목, 조○열이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음</p> <p>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회의록에 기재하고, 국무위원이 수기로 서명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결국 박○재와 이○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위원 부서를 의미함</p> <p>피고인은 최○목, 조○열 등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로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위원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p>	인정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쟁점	근거	결론
		해제했지만, 앞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로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여 다시금 부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음	
5	피고인이 윤○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피고인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열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할 것을 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윤○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정
6	피고인이 이○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는지	언론사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그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함. 이는 결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특정 언론사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에 해당함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민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하였음. 그에 따라 이○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호, 허○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인정
7	피고인이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피고인이 추○호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부정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쟁점	근거	결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p>보기 어려움</p> <p>설령 피고인이 추○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방○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호에게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윤○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p>	
8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는지	<p>피고인이 윤○열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p> <p>설령 피고인이 윤○열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윤○열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 약 한 시간 가량 국회의장의 의안 이송을 기다려 방○선으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하게 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움</p>	부정
9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p>피고인이 국회에서 한 답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윤○열과 김○현의 발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이○민이 받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윤○열이 그러한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p>	인정
10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p>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 12. 3. 이후에 피고인, 김○현, 윤○열이 순차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였고, 윤○열은 피고인과 김○현이 부서한 문서로서</p>	인정



재판부 설명자료

순번	쟁점	근거	결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음. 이는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서 '허위'에 해당함	
11	허위공문서를 행사할 목적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은 '강○구가 헌법에 따른 문서주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음을 증명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열과 김○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 나아가 피고인은 강○구 등이 추후 그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음	인정
12	피고인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행사하였는지	강○구는 피고인, 김○현, 윤○열로부터 순차로 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문서관리대장에 철하는 등으로 비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보임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구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그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정
1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에 해당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능을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현이 부서하고 윤○열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문서로 성립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대통령실에서	인정



순번	쟁점	근거	결론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던 이상,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편철되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4	피고인에게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 서류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p>피고인은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열과 김○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서 성립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강○구 등이 추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여 그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였음</p> <p>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강○구에게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p>	인정
15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는지	<p>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현이 이○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에 관한 기억 및 김○현이 이○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주는 것을 본 기억을 상실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움</p>	인정

III. 판결 결과

- **유죄**(징역 23년)
 -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 이유무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IV. 양형의 이유

	구체적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p>피고인은 1970.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았음. 피고인이 윤○열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음.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최근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함</p>
불리한 정상	<p>윤○열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함(이하 '12. 3. 내란'이라 함)</p> <p>이러한 12. 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열 前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림.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음</p> <p>12. 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음.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임</p>



구체적 양형이유	
	<p>12. 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음.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p> <p>그리고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 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남.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음.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음</p> <p>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음.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임. 결코 12. 3. 내란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님. 따라서 12. 3. 내란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음</p>



	구체적 양형이유
	<p>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임. 따라서 그러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p> <p>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 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1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음</p> <p>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 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반복하고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임</p> <p>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p> <p>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 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태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p>



	구체적 양형이유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기타 고려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V. 판결의 의의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한 중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음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병력 등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함
- 국무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아 대통령과 다름없이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 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가 형식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윤○열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고인은 윤○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검사의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였음
 - 12. 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열 前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12. 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음.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임
 - 12. 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음

-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 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남.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음.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